

제2차 청소년정책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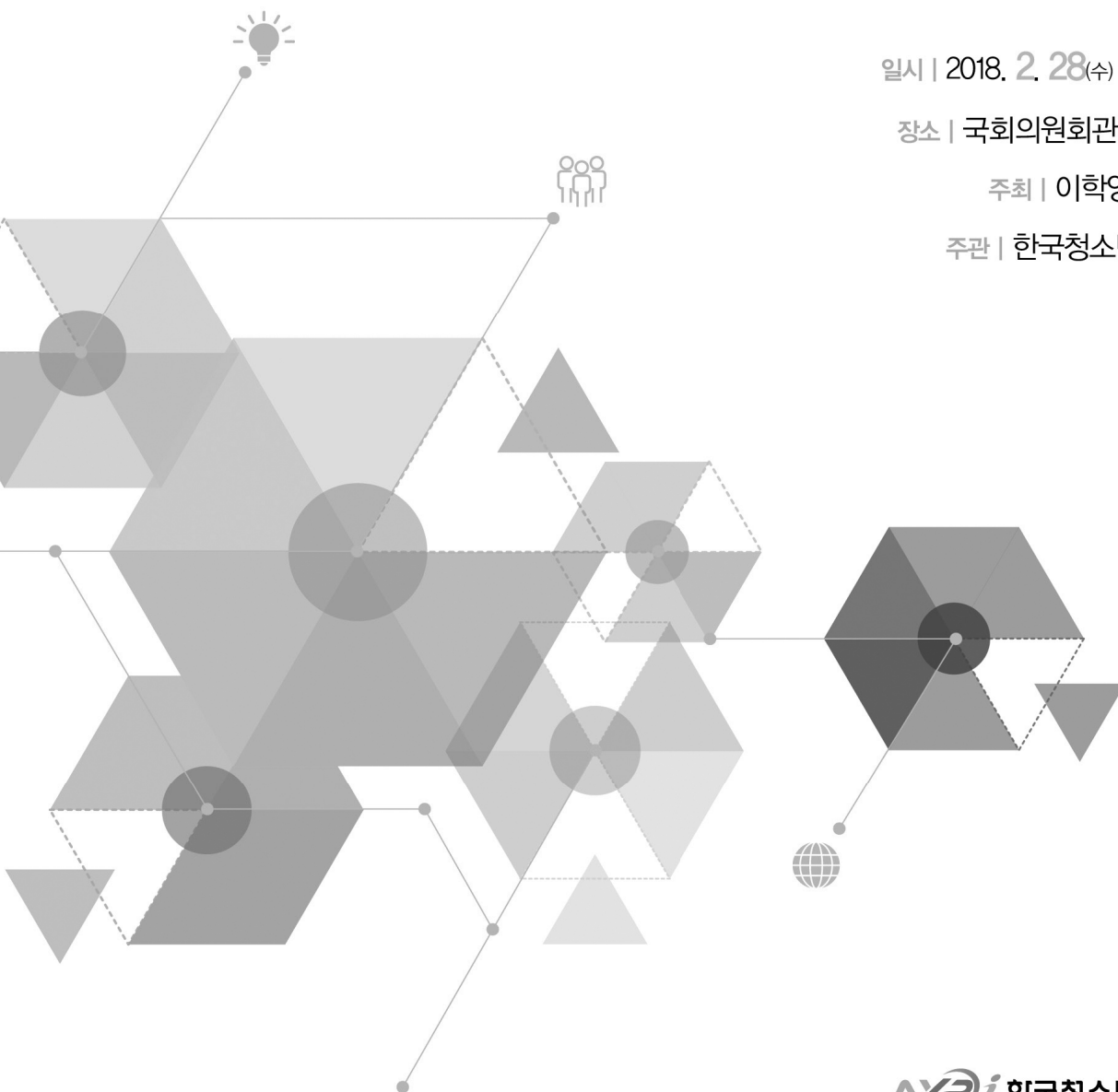
아동·청소년·청년의 연령 개념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정책과제

일시 | 2018. 2. 28(수) 10:00~12: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 이학영 국회의원실

주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2차 청소년정책포럼

10:00-10:10	개 최	사회 :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팀장)
10:10-10:20	▶ 개회사 송병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 축 사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20-11:00	주제발표	▶ 주제1 : 아동·청소년·청년의 입법상 연령기준의 쟁점과 과제 발표자 :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제2 : 법적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의 개념과 연령 정의 발표자 : 김기영 (대법원 사법정책실 조사위원)
11:00-11:10	휴 식	
11:10-12:10	지정토론	토론1 : 조남익 (광운대학교 교수) 토론2 :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토론3 :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4 : 황상민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소장) 토론5 :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12:10-12:30	종합 토론	
12:30--	폐 회	

발표1
.....

제2차 청소년정책포럼

◆ ◇ ◆
**아동·청소년·청년의
입법상 연령기준의 쟁점과 과제**
◆ ◇ ◆

김 기 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아동 · 청소년 · 청년의 입법상 연령기준의 쟁점과 과제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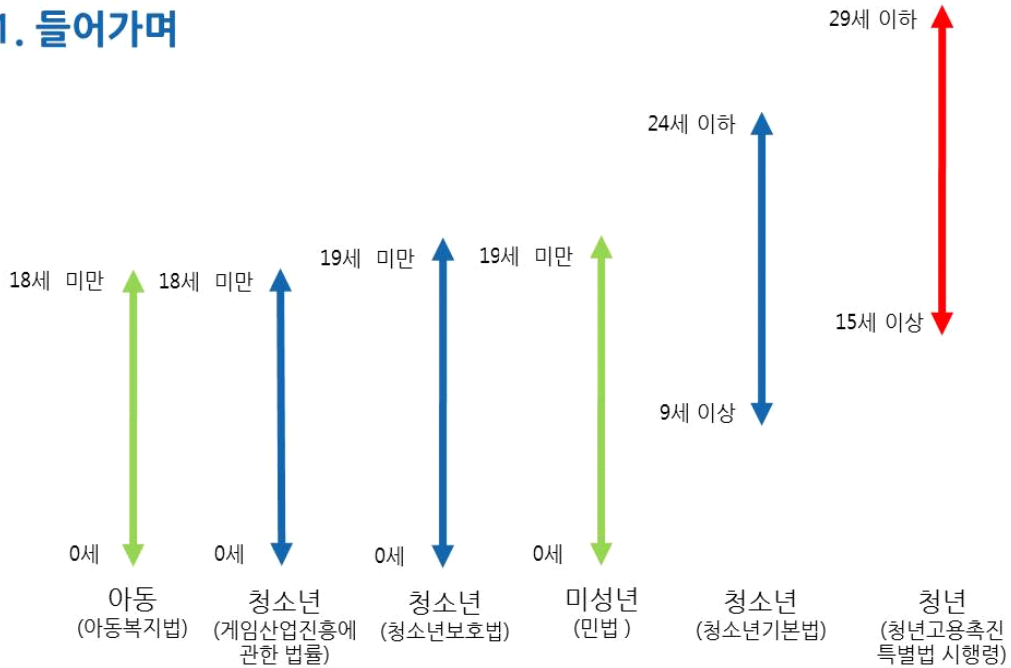
2018. 2. 23

KIPD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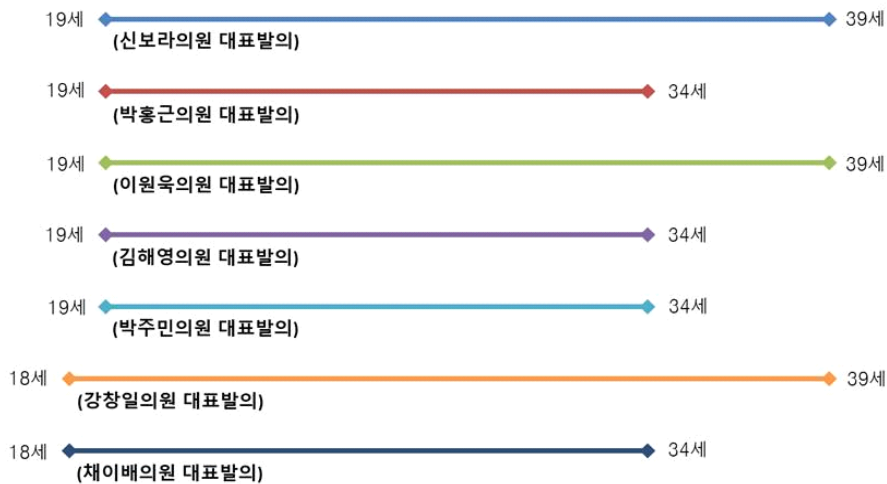
KIPD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1.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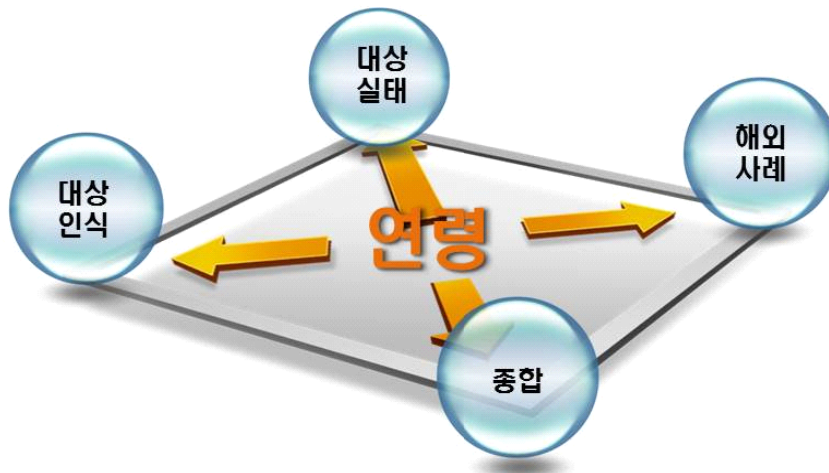


01. 들어가며

현재 20대 국회에 제출된 청년기본법(안) 청년 연령규정 비교



01. 들어가며



- 이 발표문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수탁과제로 2018년 수행 중인 '입법상 연령기준과 정책연계성 확보를 위한 연구'(김기현, 하형석, 유민상, 조성호)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토론의견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2. 설문조사 결과(당사자 인식)

2. 설문조사 결과(당사자 인식)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의 15-29세 응답자들은 아동 5-11세, 청소년 12-18세, 청년 19-29세 혹은 31세로 응답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전국 2,300가구 거주 15-39세, 통계청 승인 통계)			2016년		2017년	
			하한 연령	상한 연령	하한 연령	상한 연령
아동	전체		5.2	11.5	4.5	11.2
	성별	남자	5.2	11.6	4.4	11.1
		여자	5.2	11.5	4.6	11.3
	연령별	만 15-18세	5.2	11.5	4.7	11.3
		만 19-29세	5.2	11.4	4.4	11.1
		만 30-39세	5.1	11.6	4.5	11.3
청소년	전체		12.6	18.4	12.2	18.4
	성별	남자	12.7	18.4	12.1	18.4
		여자	12.6	18.4	12.3	18.4
	연령별	만 15-18세	12.7	18.4	12.3	18.4
		만 19-29세	12.5	18.4	12.1	18.5
		만 30-39세	12.7	18.4	12.3	18.3
청년	전체		19.3	29.5	19.4	31.2
	성별	남자	19.4	29.7	19.4	31.3
		여자	19.4	29.3	19.4	31.1
	연령별	만 15-18세	19.4	29.5	19.4	30.5
		만 19-29세	19.4	29.2	19.5	31.0
		만 30-39세	19.3	29.8	19.3	31.7

* 출처: 김기현, 하형석, 신인철(2016), 김기현, 이윤주, 유설희(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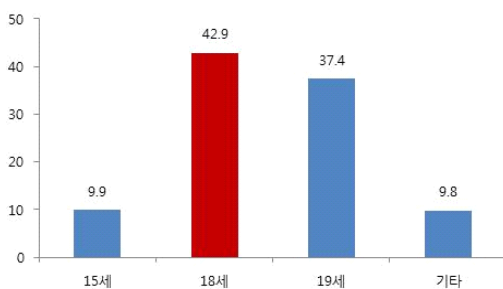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7

2. 설문조사 결과(당사자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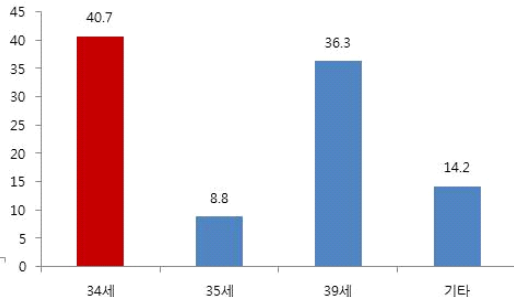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에 참여한 청년단체 청년활동가 9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2017. 11.)임.

청년 활동가들은 청년 하한연령에 대해서 18세를, 상한연령에 대해서 34세를 가장 많이 응답(법안 합의안은 39세)

〈청년 활동가들이 생각하는 청년 하한연령(2017)〉



〈청년활동가들이 생각하는 청년 상한연령(2017)〉



* 출처: 김민수(2017). 청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 제언.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점 국회와 청년이 함께 하는 청년기본법 토론회 자료집. P. 4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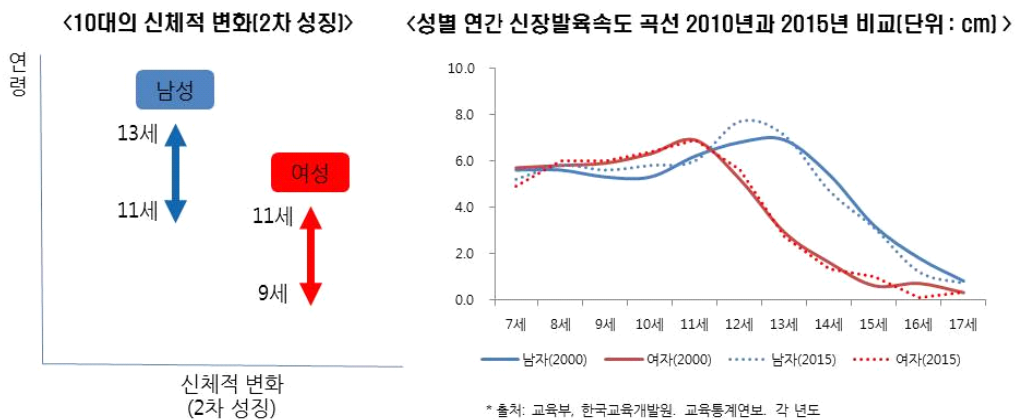
3. 이행 시점 결과(대상 실태)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이행시점 결과(대상 실태)

연령 구분 이행 시점 - 사춘기

사춘기는 아동과 청소년을 가르는 기준인데 10대 초반에 형성되나 개인별, 성별, 시대별로 변화해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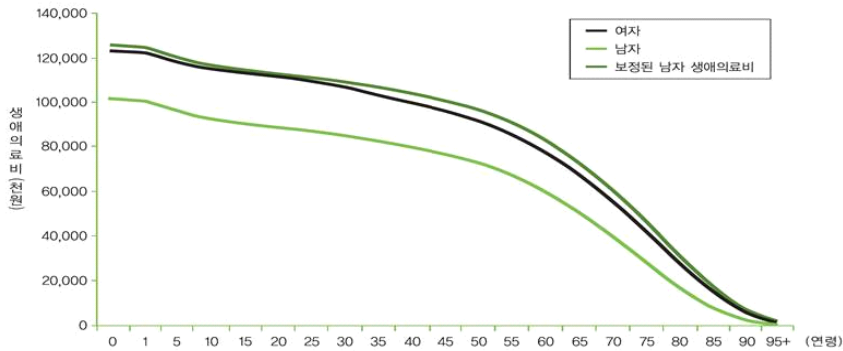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0

3. 이행시점 결과(대상 실태)

연령 구분 이행 시점 - 신체 완성(건강)

생애 총의료비를 0세에서 출발해 보면, 10세 전후로 가장 완만(지출 최소), 55세 이후 급격 하락(최대 지출)

<잔여기대여명에 따른 따른 남녀 1인당 생애의료비(단위: 천원)>



* 출처: 임달오(2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1

3. 설문조사 결과(당사자 인식)

연령 구분 이행 시점 - 학교 입학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 짓는 기준으로 초-중-고 입학연령이 고려됨. 중학교는 만12세, 고등학교는 만15세

연령

고등학교 입학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년 초

고1 만14세 이하 0.4%, **만15세 85.7%**, 만16세 이상 13.9%

중학교 입학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 초

중1 만11세 이하 1.7%, **만12세 95.0%**, 만13세 이상 3.2%

초등학교 입학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초중등교육법)

초1 만5세 0.5%, **만6세 95.6%**, 만7세 이상 3.8% (2017년 교육통계연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2

3. 설문조사 결과(당사자 인식)

연령 구분 이행 시점 - 학교 졸업

아동과 청소년, 청년을 구분 짓는 기준으로 졸업연령이 고려됨. 중학교는 만15세, 고등학교는 만18세

연령

대학교 입학

4년제 신입생 17세 이하 0.7%, **18세 69.3%**, 19세 이상 30.0%

고등학교 졸업

고3 만16세 이하 0.5%, 만17세 89.3%, 만18세 이상 10.1%로 졸업 후 다수는 **만18세**

중학교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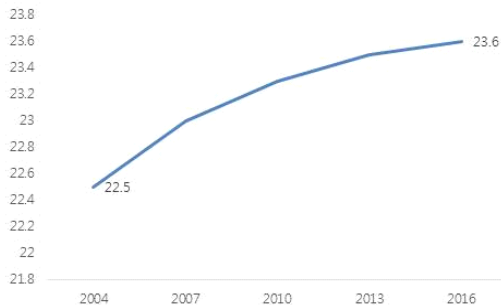
중3 만13세 3.3%, 만14세 82.2%, 만15세 이상 14.4%로 졸업 후 다수는 **만15세**

3. 이행시점 결과(대상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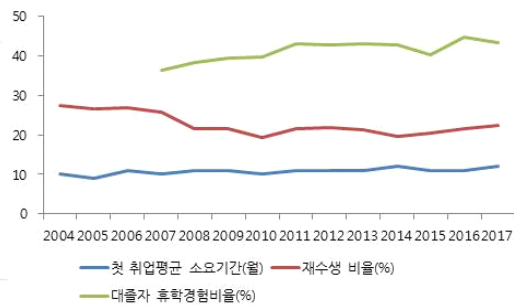
연령 구분 이행 시점 - 취업

청년들의 첫 입사 24세, 고학력화, 재수와 졸업유예, 긴 취업소요기간 등으로 입직 시기가 늦고 길어짐.

〈첫 직장 입사 연령 추이(단위: 세)〉



〈늦어지는 취업 연령과 연관된 요인들〉



* 자료: 통계청,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 서울경제신문 기사(2017. 3.16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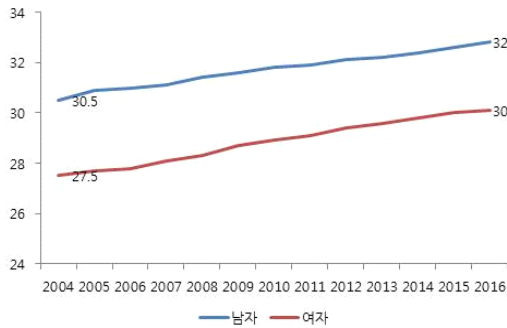
* 자료: 통계청,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 재수생 통계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통계

3. 이행시점 결과(대상 실태)

연령 구분 이행 시점 - 결혼 및 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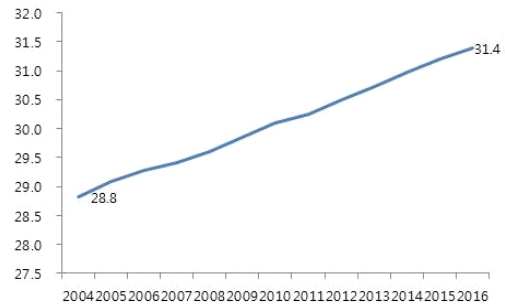
결혼과 출산은 전통적으로 성인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점차 증가해 30대 초반에 이루어지고 있음.

〈성별 초혼연령 추이 (단위: 세)〉



* 자료: 통계청, 혼인이혼통계

〈어머니의 첫째 아 평균 출산연령(단위: 세)〉



* 자료: 출생사망통계

4. 해외 사례

2. 해외사례 – 젊은이(Youth) 연령 15세-29세 많으나 매우 다양

전 세계 젊은이(youth) 정책 하한 연령규정		전 세계 젊은이(youth) 정책 상한 연령규정	
상한 연령	국가들	상한 연령	국가들
0세 부터	14개국 - 미국, 핀란드, 일본, 독일 등	19세 이하	3개국 - 영국, 이스라엘, 미얀마
1-9세 이하	7개국 - 한국(청소년기본법) , 프랑스, 아이슬란드 등	20-24세 이하	21개국 - 한국(청소년기본법) , 호주, 부탄, 네덜란드 등
10-14세 이하	48개국 - 영국,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등	25-29세 이하	62개국 - 미국, 스웨덴, 핀란드, 독일 등
15-20세 이하	111개국 - 아일랜드, 이탈리아, 덴마크 등	30-34세 이하	48개국 - 일본, 프랑스, 스위스, 필리핀 등
21세 이하	0개국	35-39세 이하	43개국 - 이탈리아, 이집트, 싱가포르 등
		40세 이상	3개국 -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네팔
		연령규정 없음	9개국 - 바레인, 리비아, 포르투갈 등

자료: youthpolicy.org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7

2. 해외사례 – 젊은 시기를 포괄하는 생애주기접근 등장

독일, 핀란드, 일본은 30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 청년 통합법률로 접근

법적정의	독일	일본	핀란드	한국
아동	만14세 미만 (아동수당 지원대상은 만18세 미만, 군입대 및 대학 진학 시 만25세까지 지급)	만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 초부터 12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학년 말 미만	만18세 미만(미성년자, 어린이, 선거권 동일)	18세 미만(미성년자 및 선거권 19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미만)
청소년	만14세 이상 만18세 미만	소년은 만18세 미만인 자 (아동복지법), 만2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소년법) (미성년자는 20세 미만, 선거권은 18세 이상)	만18세 이상 20세 이하 (아동복지법), 만18세 이상 24세 이하 (사회복지법)	청소년은 만 9세 이상 만24세 이하(보호법과 소년법은 19세 미만,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청년	만18세 이상 만27세 미만	-	-	만15세 이상 만29세 이하 (시행령)
젊은이(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까지)	만27세 미만 (연방교육지원법은 지원대상을 30세 이하까지 적용)	만0세 이상 만30세 미만 (기본계획, 40세까지 지원가능)	만29세 미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8

2. 해외사례 – 젊은 시기를 포괄하는 생애주기접근

생애주기적 접근 시에 법률에 아동, 청소년, 청년을 '(어린이와) 젊은이'로 포괄해 정의함

구분	독일	일본	핀란드	비고
법률 체계	법전 방식	개별법 방식	개별법 방식	법전 한국 적용 어려움
생애전반기 통합 법률	아동 및 젊은이지원법 (Kinder-und Jugendhilfegesetz)	어린이·젊은이육성지원추진법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젊은이법 (Nuorisolaki)	생애 전반기 연령 포괄 법령 제정 장기과제로
법률 연령 정의	있음	없음	있음	개인별로 이행기 편차가 큰 상황에서 일본처럼 연령을 담지 않는 방안도 검토, 단 입법부 견제 기능약화도 고려
법률 간 연령 정의 불일치	없음	있음	있음	장기과제로 추진 필요, 중복 필요 논리도 검토
단서 조항	있음(아동권리협약과 관련 아동을 0세부터 18세 미만으로 정의하는 단서조항을 둠. 아동수당은 이에 준함)	있음(청년을 30세 미만으로 정하나 사업에 따라 40세까지 적용가능 단서 제시)	없음	연령정의에 단서조항을 달아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음
제정일	1990년 6월 26일	2009년 4월 1일	2006년 1월 27일	-
최근 개정일	2016년 11월 4일	-	2016년 12월 21일	-

NK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9

5. 종합 의견

NK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생애주기접근 제기 - 사회적 연령과 균형 투자의 필요성

1

정책대상 연령 규정은 생물학적인 연령(고정형) 아닌 사회적 연령(유동형)

핀란드, 생애전반기를 하나의 용어 하나의 법률로 통합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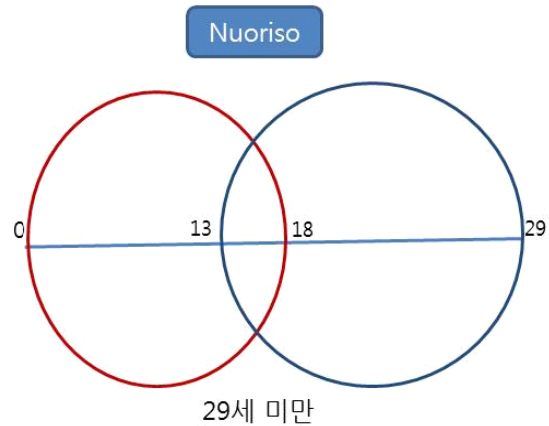
취업 지원을 받아야 할 젊은이는 19세 고졸자일수도, 29세 대학원졸업자일수도

3

아동에서 청소년, 청년기는 상호 연결되어 있어 균형 있는 투자 필요

4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을 상한연령(몇 세 미만)만 두어 생애전반기에 대해 포괄 접근



출처: Opetus- ja kulttuuriministeriö(20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1

이행기의 지연, 분화 혹은 다양화 - 유연한 연령 정의 필요성

1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어지는 이행기는 최근으로 올수록 지연됨.

젊은이들의 이행기(분가, 취업, 결혼 등)간 간격의 변화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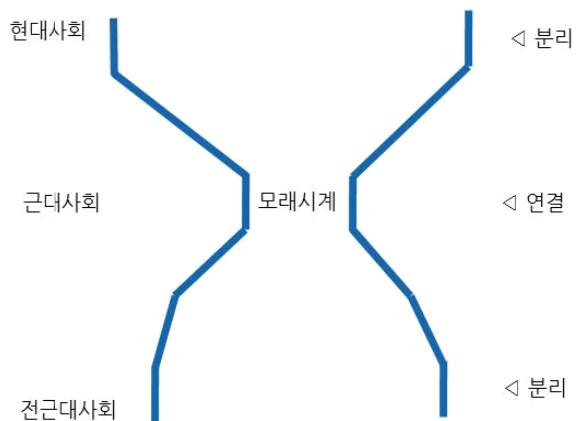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어지는 이행기(분가, 취업, 결혼 등)간의 간격도 크게 벌어짐

3

제, 개정에 어려움이 있는 법률 특성상 유연성이 부족함

4

해외사례처럼 포괄적 정의(젊은이법), 단서조항 활용, 법이 아닌 계획에 제시 검토



단,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다른 연령으로 정의하는 것은 반드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출처: Jones & Wallace(199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2

감사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2
.....

제2차 청소년정책포럼

◆ ◇ ◆
**법적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의
개념과 연령 정의**
◆ ◇ ◆

김 기 영
대법원 사법정책실 조사위원

제2차 청소년정책포럼

법적측면에서 아동청소년의 개념과 연령정의

2018.2.28.
국회

김기영(법학박사, 법원행정처 조사위원)

〈제목 차례〉

I. 개요

II. 우리나라의 (영)유아, 아동 등에 대한 개념과 연령정의에 관한 규정

III. 각국의 입법례

IV. 결론

I. 서론

□ WHO의 용어

- An **adult** is a person older than 19 years of age unless national law defines a person as being an adult at an earlier age.
- An **adolescent** is a person aged 10 to 19 years inclusive.
- A **child** is a person 19 years or younger unless national law defines a person to be an adult at an earlier age. However, in these guidelines when a person falls into the 10 to 19 age category they are referred to as an adolescent (see adolescent definition).
- An **infant** is a child younger than one year of age.

3

I. 서론

□ 1. 아동의 개념

- 아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중간, 즉 6~12세 정도의 어린이를 말함.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의미와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에서 사용하는 아동의 의미, 법률상 정의된 아동의 의미가 서로 다름.
- 아동복지법의 아동에 대한 정의 규정(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은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권리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제1조에서 “아동의 범위는 특별히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까지로 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음.
- 아동(Child)은 때때로 소년(young persons) 혹은 청소년(juvenile)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나 동일개념으로 해석

4

I. 서론

□ 아동의 개념

그런데, 우리 나라의 아동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각각의 필요에 따라 매우 다양한 연령기준을 제시

- 우선,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연령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성년과 미성년의 일반적인 구별기준인 위 민법 규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자로 해석되며(민법 제4조),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규정(아동복지법 제3조), 소년법에 의하면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소년법 제2조)

- 그러나, 우리나라가 아동권리국제협약에 가입할 당시 아동의 연령에 관한 위 협약 제1조에 대한 유보를 하지 아니한 이상, 미성년자보호법과 아동복지법 등에 의하여 미성년자, 소년 혹은 청소년으로 인정되는 18세 이상인 자는 위 국내법상으로는 권리주체 혹은 보호대상으로 될지언정, 위 아동권리협약의 아동으로서 권리주체와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

5

□ 인간의 연령기준

- 인간의 일생은 이런 연령대를 기준으로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등의 생애주기를 거치게 됨.

- 또 아동기는 신체적·사회적·정서적·지적 발달의 속도가 매우 현저하므로 이를 다시 아동전기와 아동후기로 나누기도 한다.

즉 6~8세까지를 아동전기, 9~12세까지를 아동후기로 하여 발달단계를 구분한다. 아동기의 앞을 유아기(3~5세), 아동기 이후를 청소년 전기(12~14세)라고 한다.

- 아동과 청소년의 구별은 생물학적인 개념보다는 문화적 사회적 개념이다. 아동은 결혼적령기라고 하는 출생부터 성적인 발전단계(Pubertät)까지의 연령을 말하고 협의의 의미에서도 초중말기 등의 단계로 구분됨.

6

□ 아동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규정

- 현행법제도에서 아동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규정에서 청소년의 개념과 구별

헌법 제32조-연소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제1항에 따르면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7

II. 우리나라의 (영)유아, 아동 등에 대한 개념과 연령정의에 관한 규정

유아의 개념

만 3세미만부터 취학전까지의 어린이(유아교육법 제2조)

영유아의 개념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영유아보육법 제2조)

아동의 개념

18세 미만인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복지법의 아동에 대한 정의 규정은 아동권리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제1조에서 “아동의 범위는 특별히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까지로 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음.

어린이의 개념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13세 미만인 자

8

II. 우리나라의 (영)유아, 아동 등에 대한 개념과 연령정의에 관한 규정

- 청소년의 개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 청소년 한부모는 24세미만의 부모로 정의되며, 18세 미만인 사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한 경우에는 병역이행기간을 가산한 연령미만을 말한다).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 제2조

- 18세 미만인 자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청소년기본법 제3조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기본법 제4조는 “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

청소년보호법 제2조- 19세 미만인 자

9

2. 현행법상 아동학대의 주요 처벌규정

아동복지법은 그 보호대상이 18세 미만

법률	행위객체	금지행위	법정형
아동복지법	18세 미만 아동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패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제17조 제2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제17조 제3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경서적 학대행위(제17조 제5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제17조 제6호)	

10

2. 현행법상 아동학대의 주요 처벌규정

청소년보호법은 그 보호대상이 19세 미만이고, 금지행위의 유형을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라고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보다 그 적용범위가 넓다.

청소년보호법 제6조는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을 할 때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

법률	행위객체	금지행위	법정형
형법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	학대행위(제273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기·학대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치사상하게 하는 행위(제275조 제1항)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사망: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부조를 요하는 자	유기행위(제271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6세 미만 아동	아동을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업무자 또는 그 종사자에게 인도하는 행위(제274조(아동독사))	5년 이하의 징역
청소년보호법	19세 미만의 청소년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제30조 제6호)	5년 이하의 징역(제57조)

11

2. 현행법상 아동학대의 주요 처벌규정

아동학대처벌법은 그 보호대상이 18세 미만이고, 금지행위의 유형을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라고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보다 그 적용범위가 넓다.

법률	행위객체	금지행위	법정형
아동학대처벌법	18세 미만 아동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4조: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행위(제5조: 아동학대중상해)	3년 이상의 징역
		상습적으로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행위(제6조: 상습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는 행위(제7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12

II. 각국의 입법례

1. 형사미성년자

세계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소년사법의 형사책임연령(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은 7세에서 18세 미만까지 매우 다양함.

그러나 각국의 형사책임연령을 우리나라의 형법상의 형사미성년자연령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음.

독일의 경우 0세는 신생아(Neugeborens) 또는 젖먹이(Säugling), 1~3세는 작은 어린이(Kleinkind), 4~5세는 어린이(Kind), 6~12세는 학령아동(Schulkind), 13~17세는 청소년(Jugendlicher), 18~19세는 젊은 성인(junger Erwachsener) 또는 청소년(Heranzwachsener)로 구분

일본의 아동복지법 제4조에서는 아동을 '만 18세에 이르지 아니한 자'로 정의하고 있음.

13

II. 각국의 입법례

2. 독일 소년법원법(JGG)상 대상년령

독일 소년법원법(JGG) 제1조에 의하면 소년(Jugendliche, 14세 이상 17세 이하)과 청년(Heranzwachsene, 18세 이상 20세 이하)로 구분

독일의 소년사법제도의 절차에서 소년사건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가정법원에 의한 아동보호를 제외하고는, 형사사건 구분없이 소년법원에서 관할

독일 소년법원법(JGG) 규정

제1조 인적 및 물적 범위(Persönlicher und sachlicher Anwendungsbereich)

(1) 본 법률은 소년(Jugendlicher) 혹은 청년(Heranzwachsener)이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비행(Verfehlung)을 저지르는 경우에 적용된다.

(2) 소년(Jugendlicher)은 범죄행위당시 14세이지만 18세미만인 자이며, 청년(Heranzwachsener)은 범죄행위당시 18세이지만 21세미만인자를 말한다.

제3조 책임(Verantwortlichkeit)

소년(Jugendlicher)은 범죄행위당시 도덕적 및 정신적 발전수준에 따라 범죄의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고 이러한 인식력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성숙도가 충분하다면 형법상 책임이 있다. 미성숙으로 인해 형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 소년의 교화를 위해서 판사는 가정법원과 같은 조치들을 명령할 수 있다.

14

II. 각국의 입법례

3. 일본 소년법상 대상년령

일본은 우범소년에 대해 소년법 제3조 제1항 3호에서 규정
우리나라 소년법 제4조 제3호에서 '우범소년'에 대해서 10세 이상인 소년
로 규정하고 있음.

소년법 제3조(심판에 회부해야 할 소년)

① 다음에 게시하는 소년은, 이를 가정재판소의 심판에 회부한다.

一 죄를 범한 소년

二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4세 미만의 소년

三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가 있으며, 그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죄를 범하
거나 또는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イ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따르지 않는 성벽이 있을 것

ロ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 머무르지 않을 것

ハ 범죄성이 있는 사람 혹은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
장소에 출입할 것

ニ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성벽이 있을 것

② 가정재판소는, 전항 제2호의 소년 및 동항 제3호의 소년으로서 14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도도부현지사 또는 아동상담소장으로부터 송치를 받았을 때에 한
하여, 이를 심판에 회부할 수 있다.

15

IV. 결론

1. “청소년”은 학술적인 논의나 우리나라의 법질서의 측면에서
통일적인 개념이 아니다!

UN-아동조약의 규정도 있지만 각국의 입법과정에서 가치지향
적인 입법효과분석을 보면 18세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정의하
고 우리나라 청소년진흥법과 같은 법률에서 젊은 성년은 비록
16세이지만 30세미만의 자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2. 청소년과 아동의 구별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음

3. 연령의 관점에서는 아동의 개념은 청소년과 매우 이질적임.

4. 이 때문에 아동 및 청소년의 개념은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
이 아니라 입법목적이 무엇이나에 따라 그 대상을 적용해야 하
며, 이들에 대한 서로 다른 생활근거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

16

지정토론
.....

제2차 청소년정책포럼



- 토론1 **조남익** 광운대학교 교수
- 토론2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토론3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4 **황상민**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소장
- 토론5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M/E/M/O

M/E/M/O

M/E/M/O

M/E/M/O

[illegible]

제2차 청소년정책포럼
아동·청소년·청년의 연령개념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정책과제

인 쇄 2018년 2월 26일

발 행 2018년 2월 27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6/7층 (044) 415-2114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계문사 전화 02)725-5216(代)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